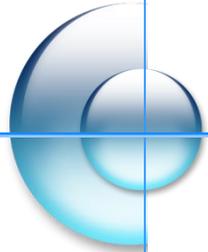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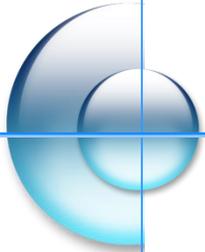


FY 2019 업무담당자 교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 목 차 -

1. 회계의 이해	3
2. 주요 세법의 이해	17
3. 연구비 정산 업무의 이해 및 유의사항	23



1. 회계의 이해	3
1.1. 회계 개요	4
1.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요	5
1.3.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6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7
1.5. 카드 사용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14
1.6. 결산 및 보고	15

1. 회계의 이해

1.1. 회계 개요

회계 정의

-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식별(인식), 측정, 기록 및 보고 →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 제공**
- 재무회계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제적 실체의 기본적인 재무상태 및 운영 성과 정보 제공
- 관리회계 - 내부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적합한 재무상태 및 운영 성과 정보 제공

경제적 거래나 사건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 (지출거래)

인적자원 서비스 대가 지급

연구수행 재화 및 서비스 취득

관리운영 재화 및 서비스 대가 지급

유형·무형자산 및 금융자산 취득

현금을 받는 거래 (수입거래)

연구 & 교육 서비스 대가 수령

대여 및 사용 서비스 대가 수령

유형·무형자산 매각 대가 수령

출연금, 기부금, 배당금 등의 수령

회계의 일반 원칙

1_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2_측정

취득원가

시장가격

3_기록

단식

복식

4_보고

예산결산서

재무제표

산학협력단 회계의 법적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 일반기업회계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 회계의 이해

1.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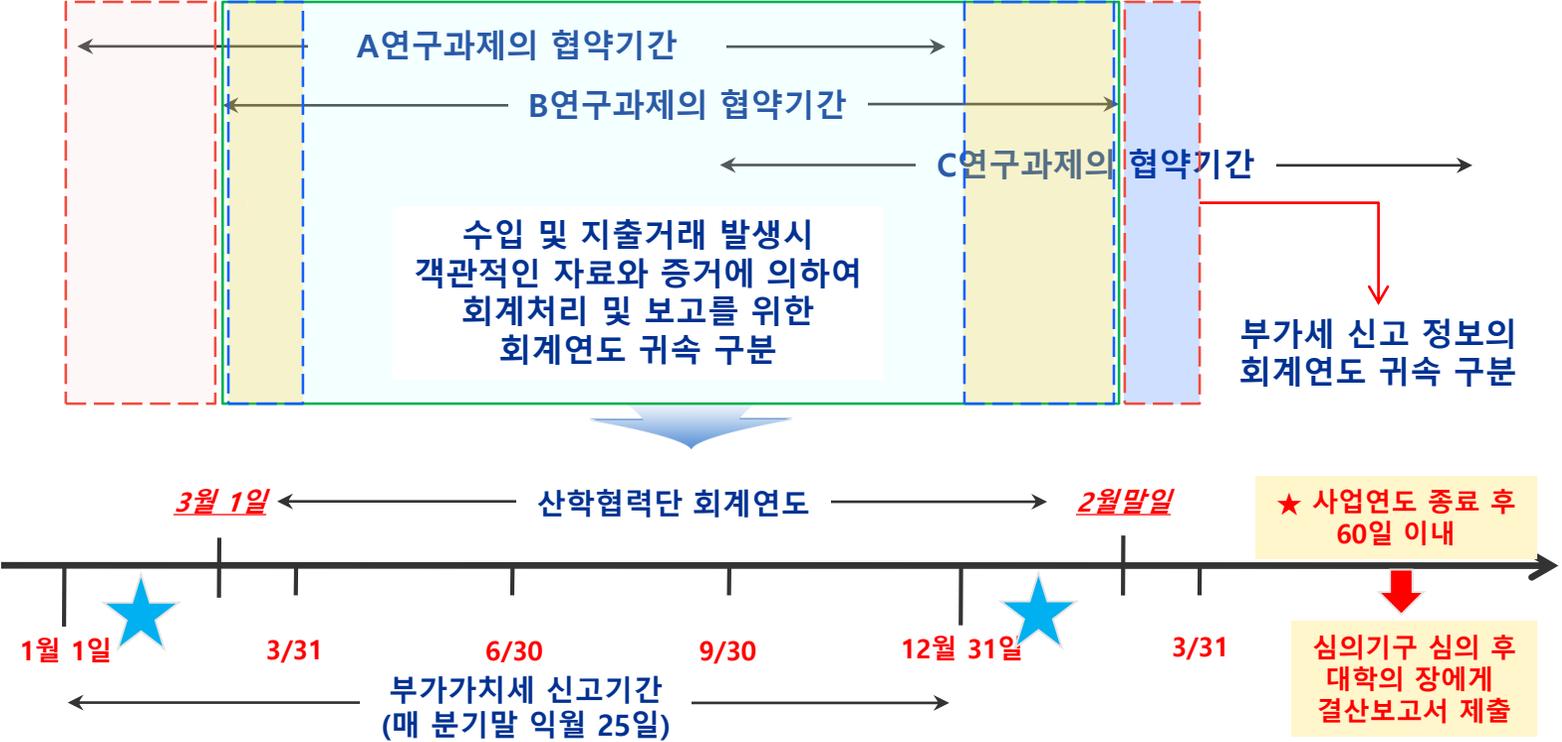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 ① 총칙, ② 예산, ③ **회계**, ④ 결산 및 보고, ⑤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
- 회계 ☞ ①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② 재무상태표, ③ 운영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및 ⑤ 자산·부채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 구분

- 규칙 제3조(정의) 제7호에서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로 한다고 규정
- 연구과제의 협약기간과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연도 귀속 구분**이 매우 중요 ☞ 거래 발생 후 회계처리(결의)가 지연되는 경우 결산 및 부가세 신고 등의 오류 발생

연구과제
협약기간,
회계연도
및
부가세
신고기간



1. 회계의 이해

1.3.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 필요한 경우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작성 가능
-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한 부속명세서 작성 가능
- 규칙 제17조, 별표 1~3 계정과목의 구분 및 내용 설명

재무상태표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재무상태표 결산기준일(2월말일) 현재 자산, 부채 및 기본금에 관한 정보 제공

자산 과목	당 기	전 기	부채와 기본금 과목	당 기	전 기
자산			부채	②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II. 비유동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	※	기본금	③	
단기금융상품	※	※	I. 기본금		
...			II. 적립금		
II. 비유동자산			III. 운영차익	④-⑤	
자산총계	①		부채와기본금총계	②+③	

※ **현금흐름표** 회계연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유입(입금)과 유출(출금)에 관한 정보 제공

운영계산서

$$\text{운영차익} = \textcircled{4} - \textcircled{5}$$

■ 운영계산서 회계연도(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중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운영비용 과목	당 기	전 기	운영수익 과목	당 기	전 기
I. 산학협력비			I. 산학협력수익		
II. 지원금사업비			II. 지원금수익		
III. 간접비사업비			III. 간접비수익		
IV. 일반관리비			IV. 전입및기부금수익		
V. 운영외비용			V. 운영외수익		
비용총계	⑤		수익총계	④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회계처리 이해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올바른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기록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재  분개 분개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제표 및 일계표/월계표 등의 회계 문서로 기록 관리 	
경제적 거래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사례	수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과 상호 합의 후 날인한 연구과제 등의 협약서 및 계약서 산학협력단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등 금융 계좌의 입금 거래 내역 내·외부 의사결정 결과로 확정된 문서(간접비 관리지침, 연구비 정산서, 품의서 등)
	지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과 상호 합의 후 날인한 계약서 산학협력단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카드 전표 등 금융 계좌의 출금 거래 내역 내·외부 의사결정 결과로 확정된 문서(간접비 관리지침, 연구비 정산서, 품의서 등)
		
회계 문서 개요	분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발생순서에 따라 거래 내용(적요)을 포함한 회계처리 결과를 기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분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
	총계정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거래 내용(적요)을 관리
	시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누적 발생금액(합계)과 잔액을 관리
	일계표/월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월) 잔액, 당일(월) 수입, 당일(월) 지출 및 차일(월) 이월액을 관리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 수입거래 회계처리 관련 운영수익 계정과목 설명

운영수익
계정과목

- 연구과제 수행, 교육운영, 기술이전 및 설비자산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현금)를 받는 거래
- 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
 ※ **기술이전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 / **기부금수익**은 수령한 날에 인식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 2 ☞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

운영수익
계정과목
해설

운영수익 과목	운영수익 과목 해설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양도 및 대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장비 또는 토지 및 건물 의 사용/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III.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지원금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
IV. 전입및기부금수익	
V. 운영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1 / 2

수입거래 회계처리

- 실무상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을 기초로 협약(계약)의 내용, 지원기관의 유형, 부가세 과세/면세 구분 등을 검토한 후 올바른 운영수익 등의 계정과목을 선택
- 수입거래는 ① 운영수익 관련 수입거래와 ② 자산 매각 및 ③ 부채 발생 수입거래로 구성됨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1 - 연구수익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정부기관과의 연구과제 협약서 내용 확인 결과 연구성과물이 정부기관의 소유로 귀속되는 과제임
자료와 증거	• 10/26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000원이 입금됨 • 10/21 협약서에 따라 정부기관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현금및현금성자산	330,000,000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	30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0

- ※ 유의사항
- 연구성과물의 귀속이 산학협력단에 있는 경우 대가성이 없으며,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계산서(또는 영수증) 발행
 - 연구성과물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대가성이 있음)되나 신기술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인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 대가성이 없는 연구비 수입거래의 대변과목은 지원금정부연구수입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300,000,000원이 입금됨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2 - 지식재산권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민간기업체와의 계약서 내용 확인 결과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1/23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0,000원이 입금됨 • 11/21 계약서에 따라 민간기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1.23.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 유의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 노하우이전수익으로 구분함에 유의
 - 출원중인 지식재산권(IP)의 대여 및 양도거래는 지식재산권이전수익 과목으로 처리함에 유의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3 / 4

수입거래 회계처리

- 실무상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을 기초로 협약(계약)의 내용, 지원기관의 유형, 부가세 과세/면세 구분 등을 검토한 후 올바른 운영수익 등의 계정과목을 선택
- 수입거래는 ① 운영수익 관련 수입거래와 ② 자산 매각 및 ③ 부채 발생 수입거래로 구성됨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3 - 자산 매각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산단 소유의 연구기자재가 불용으로 확정되어 민간기업체에게 매각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6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00원이 입금됨 • 10/21 계약서에 따라 민간기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자산대장 조회 결과 자산번호 #, 취득금액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0원으로 확인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5.	현금및현금성자산	33,000,000	기계기구 (*)	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_기계기구 (*)	25,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 유의사항
 •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는 ① 예산결산서상 기타운영외수익 처리 후 ② 자산대장 매각 처리 과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로 반영
 • 결산시점에 자산대장 매각 처리를 위하여 **매각된 자산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함에 유의

수입거래 회계처리 사례 4 - 부채 발생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과제의 협약서 내용 확인 결과 참여기업의 연구비 중 일부 금액이 입금된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1/23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참여기업 연구비로 100,000,000원이 입금됨 • 11/21 협약서 내용 확인 결과 참여기업 연구비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1.23.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예수금	100,000,000

※ 유의사항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시 산단 소유로 귀속되는 금액과 참여기업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함에 유의
 • 연구과제 정산시 부적정 집행으로 판정  연구원이 해당 연구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금되는 금액 포함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 지출거래 회계처리 관련 운영비용 등 계정과목 설명

운영비용
계정과목

- 연구과제 수행 및 교육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가(현금)를 지급하는 거래
- 규칙 제23조 ~ 제25조 ☞ **모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 2 ☞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

운영비용
계정과목
해설

운영비용 과목	운영비용 과목 해설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의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수익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4.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III. 간접비사업비	
1.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2.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등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IV. 일반관리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기타 관리비용 등
V. 운영외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IV.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대학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1 / 2

지출거래 회계처리

- 실무상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내부 품의서(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을 기초로 계약의 내용, 대가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올바른 운영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선택
- 지출거래는 ① 인건비, ② 인건비 외 비용 지출거래와 ③ 자산 취득 및 ④ 부채 상환 지출거래로 구성됨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1 - 인건비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원의 10월분 인건비 1억원(예수금 등 2천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6 제세예수금 등을 차감한 80,000,000원과 예수금 20,000,000원을 각각 출금 이체 처리함 • 10/21 내부 품의서에 따라 연구원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인건비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예수금	20,000,000

- ※ 유의사항
- 인건비 지출시 내부 품의서와 근거 서류(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확인 절차에 유의
 - 공제항목(원천세, 4대보험, 학자금상환금 등)에 해당하는 예수금 징수금액은 별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함
 -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 구분(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유의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2 - 인건비 외 비용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민간기업체와의 계약서 내용 확인 결과 지적재산권 출원 경비를 집행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1/2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0,000원을 출금 이체 처리함 • 11/21 계약서에 따라 민간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1.23.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 ※ 유의사항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 ☞ 부가세 환급 업무 발생함에 유의
 - 지식재산권(IP) 등록거래는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처리함에 유의

1. 회계의 이해

1.4. 수입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3 / 4

지출거래 회계처리

- 실무상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내부 품의서(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을 기초로 계약의 내용, 대가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올바른 운영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선택
- 지출거래는 ① 인건비, ② 인건비 외 비용 지출거래와 ③ 자산 취득 및 ④ 부채 상환 지출거래로 구성됨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3 - 자산 취득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기자재 취득 결정 후 민간기업체에게 발주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6 연구기자재 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0,000원을 출금 이체 처리함 • 10/21 품의서, 계약서에 따라 민간기업체로부터 기자재를 공급받고, 검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기계기구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0
	부가세대급금_연구비	10,000,000		

※ 유의사항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  부가세 환급 업무 발생함에 유의
- 예산편성시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과목이 별도 구분되어 있음에 유의
-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50만원) 이상의 구매 거래는 자산으로 등재(내용연수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에 유의

지출거래 회계처리 사례 4 - 부채 감소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참여기업의 연구비 중 일부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금액을 참여기업에게 송금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1/23 협약서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연구비로 100,000,000원을 출금 아체 처리함 • 11/21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참여기업 연구비로 100,000,000원이 입금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1.23.	예수금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유의사항

- 예수금 잔액의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장기간 동안 출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 확인 필요
- 산학협력단의 소유가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은 반드시 출금 처리를 수행하여야 함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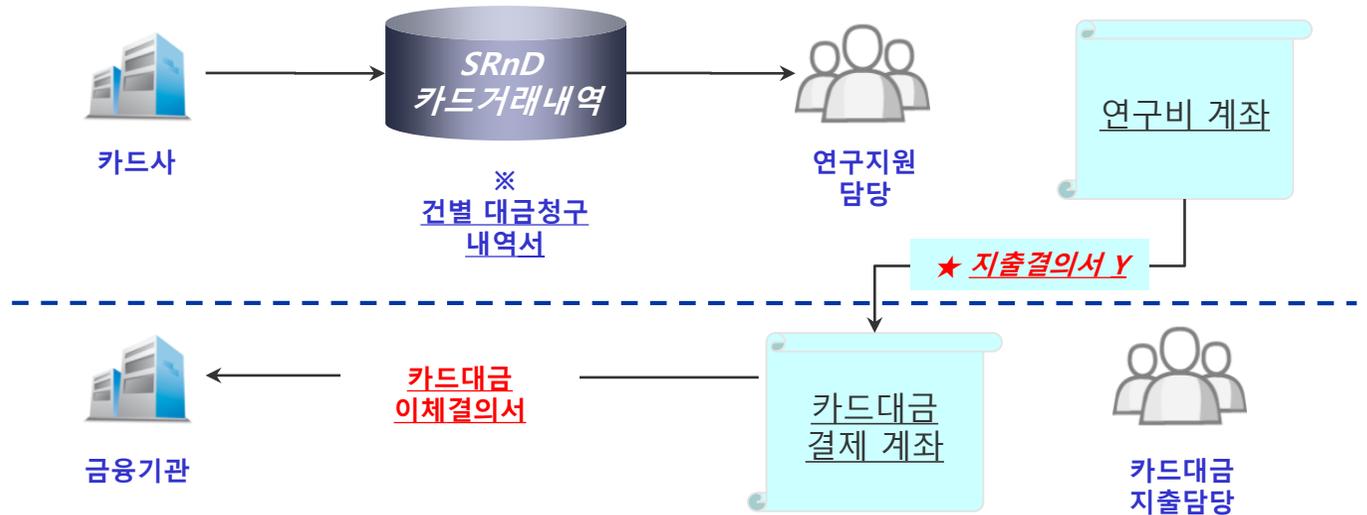
1. 회계의 이해

1.5. 카드 사용 및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카드거래 회계처리

- 신용카드 거래는 ① 사용시점과 ② 카드대금 지출시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가 발생함에 유의
- 사용 내역과 지출 내역을 상호 검증하여 결의서가 누락된 사용 내역 자료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 결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용 승인 후 대금 결제일자까지 미결의된 카드거래 건은 지연 사유 확인 필요

카드 사용 및 지출 거래 흐름



카드 사용거래 회계처리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연구과제추진비	50,000,000	미지급금_연구비 (*1)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_카드계좌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_연구비계좌	5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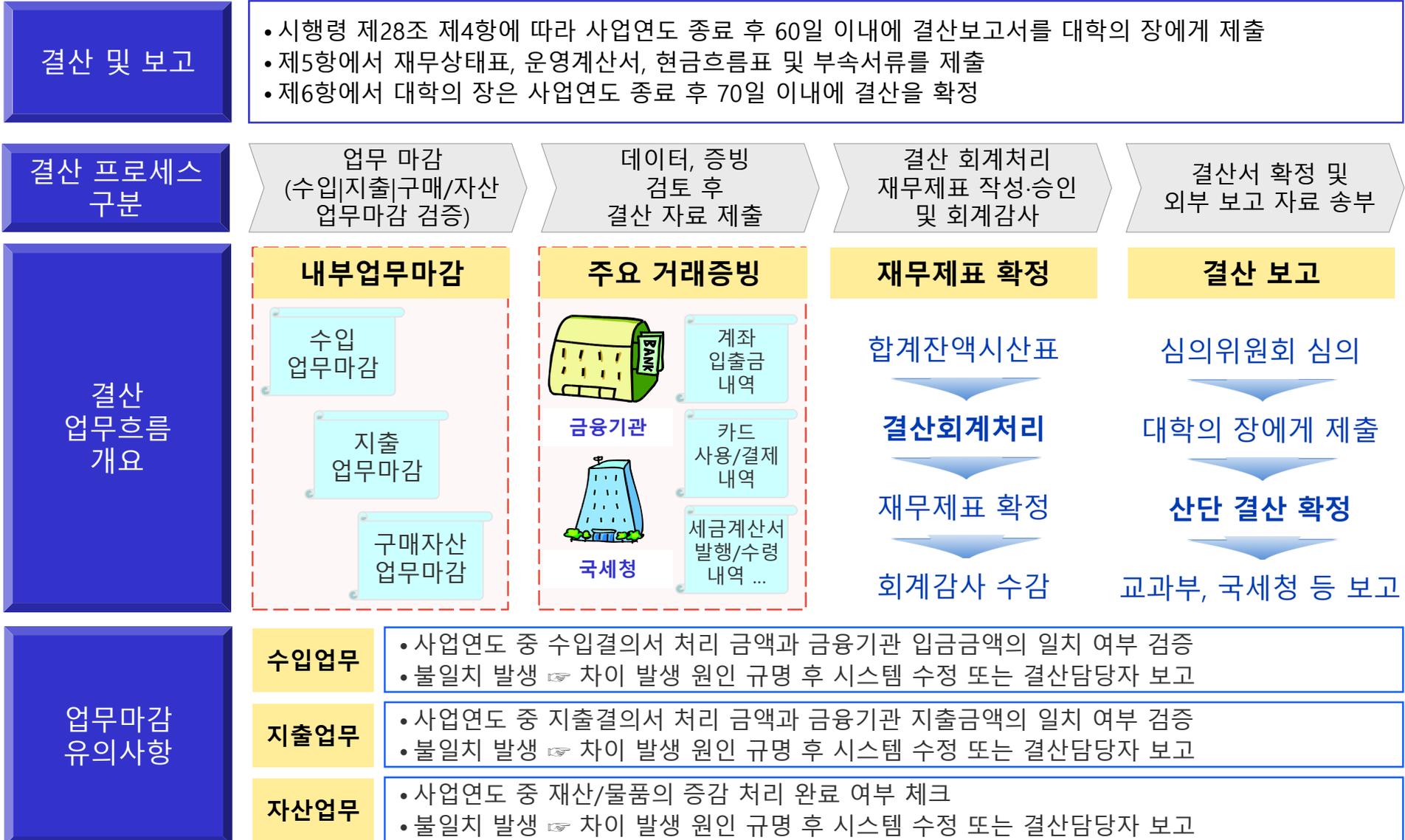
카드대금 지출거래 회계처리 및 사후관리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1.25.	미지급금 (*1)	6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_카드계좌	60,000,000

- ※ 유의사항
- **카드번호(*1)**, 거래일자, 청구금액, 지출금액, 카드책임자 등의 정보를 검증하여 미지급금 차액의 사후관리가 필요
 - 기관별로 매월 특정일자 기준의 **카드번호별(*1)** 사용(청구)금액과 결의서 작성금액의 차이 현황 관리 필요

1. 회계의 이해

1.6. 결산 및 보고



1. 회계의 이해

1.6. 결산 및 보고

결산 회계처리
(진행기준)

- 규칙 제25조 (운영수익의 인식) → 운영수익은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
-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

진행률 수익

- 당해연도 수익 금액 = **용역계약금액 × 진행률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 직전연도 누적 수익 금액

진행률
측정 방법
[출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원칙적인 방법	간편법
진행률 = 누적 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 누적 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 누적 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 간접비 + 자산취득비
•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용역기간 이후 감가상각비	•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순수사업비 + 간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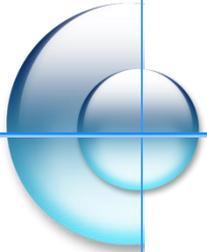
진행기준
수익 인식
사례
및
회계처리
예시

■ 진행기준 수익 인식 사례 및 회계처리 예시 _ 금액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① 계약 금액 (*)	② 누적 발생원가	③ 간접비	④ 자산 취득비	⑤ 누적 진행률	⑥=1×5 누적 수익	⑦ 과거 인식수익	⑧=6-7 당기 수익	⑨ 누적 현금수령	⑩=9-6 선수수익 (미수금)
#0001	100	65	15	0	65.0%	65	50	15	50	-15
#0002	500	100	50	10	20.0%	100	40	60	250	150
#0003	1,000	500	50	150	50.0%	500	300	200	600	100
#0004	2,000	1,500	200	500	75.0%	1,500	800	700	1,800	300
#0005	400	100	60	20	25.0%	100	20	80	100	0
합계	4,000	2,265	375	680		2,265	1,210	1,055	2,800	535

(*) 계약금액은 총예정원가에 해당하며, 매 결산시점마다 계약금액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

구분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입금시점	현금	2,800	산학협력연구수익	2,800
결산시점	미수금	15	산학협력연구수익	15
	산학협력연구수익	550	선수수익	550



2. 주요 세법의 이해	17
2.1. 법인세 개요	18
2.2. 소득세(원천세) 개요	19
2.3. 부가가치세 개요	20

2. 주요 세법의 이해

2.1. 법인세 개요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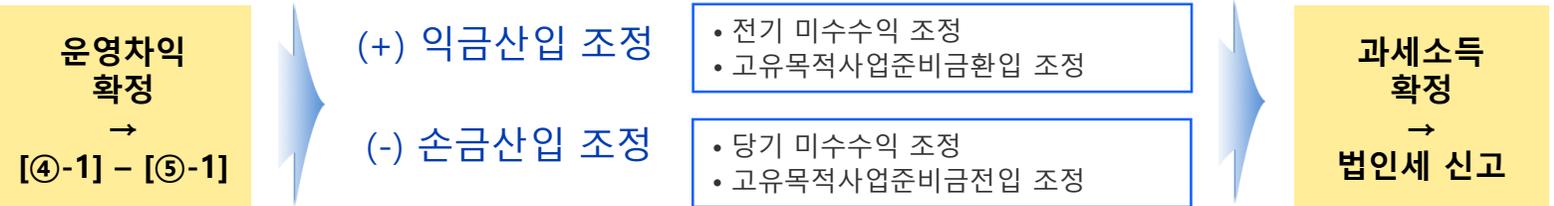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 산학협력단의 세법상 실체 구분(비영리법인) 및 과세소득 범위(수익사업 소득)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동법 제113조 제1항 ☞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법인세법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 구분을
반영
☞
운영계산서
분류 체계

■ 운영계산서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운영비용 과목	수익	비수익	운영수익 과목	수익	비수익
I. 산학협력비	●		I. 산학협력수익	●	
II. 지원금사업비		●	II. 지원금수익		●
III. 간접비사업비			III.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비	●	
지원금수익		●	지원금사업비		●
IV. 일반관리비			IV. 전입및기부금수익		
인건비	●		전입금수익		●
일반제경비	●		기부금수익		●
V. 운영외비용			V. 운영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이자수익	●	
...			그외수익	●	
비용총계	⑤-1	⑤-2	수익총계	④-1	④-2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구조



2. 주요 세법의 이해

2.2. 소득세(원천세) 개요

소득세 (원천세)

- 소득세법 제4조(소득 구분)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함에 유의

[거주자]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

소득 구분		원천징수 여부	세율	내용
종합소득	이자소득	○	14%~35%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배당소득	○	14% (25%)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사업소득	○ (X)	3%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
	근로소득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에 의해
	연금소득	일반 공적연금	3%~5% 기본세율	
	기타소득	○	20%	필요경비 공제
퇴직소득		○	기본세율	
양도소득		X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규정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등)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 규정 (직무발명보상금 등)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사업소득 중 비과세 소득 규정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법적 근거

2. 주요 세법의 이해

2.3. 부가가치세 개요 ☞ 매출 부가세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 부가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개인, 법인(국가 등 포함) 등의 사업자 → 부가세 납세의무 있음
- 부가세법 제26조(면세) 제5호, 제6호 및 제18호 ☞ 의료보건의용역, 교육용역 및 연구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26-42-2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구조

(+) 매출 부가세 ☞ 부가세예수금

- 과세와 면세의 구분
- 새로운 학술 및 기술 해당 여부 판단

(-) 매입 부가세 ☞ 부가세대금

-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 판단
- 공통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납부세액 확정
→ 부가세 신고

과세와 면세의 구분 판단 요약

대가성이 없음	대가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면세 ★	•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용역 → 과세	
		• 새로운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외의 연구용역 → 2013년 12월 31일 이전 : 면세,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새로운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 면세 ★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 판단

- 현업담당자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본교의 경우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이 관련 과제에 명시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됨 ☞ 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함에 유의

2. 주요 세법의 이해

2.3. 부가가치세 개요 ☞ 과세와 면세의 구분 실무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과세와 면세의 구분</p> <p style="text-align: center;">실무 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조심2012서 4856 (2013.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조사와 통계이론을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행법2011 구합 283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님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2011두 3913 (2012.12.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 적성검사용역은 원고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에 면제되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불공제 매입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실무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사례는 아래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한 경우 비영리법인 매입액, 간이사업자(영세사업자)매입액, 면세사업자 매입액(도서, 1차생산물(꽃,미가공식료품), 우체국, 교육용역, 의료용역 등) ②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 렌트카, 유류비, 주차요금, 차량유지보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③ 철도, 택시,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 등 승차료 및 환불수수료 등 ④ 상품권 구입 법인카드 영수증 ⑤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⑥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인터넷상거래, 이니시스 등의 인터넷 쇼핑몰 결재 중 실공급자가 면세의 경우 : 학회 등 비영리 기관에서 결재한 학회등록비 등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매입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주요 세법의 이해

2.3.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면세거래 및 환급거래의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 업무 구분별 과세/면세거래 및 환급거래의 회계처리 사례
-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기한(매 분기말일의 익월 25일) 내 지출확정 허용기간 (매 분기말일의 익월 15일) 내에 지출결의가 확정된 건만 환급 정산 처리 (★ 환급 정산 처리 후 반납 등 발생시 가산세 발생 가능)

수입 과세/면세거래 회계처리

거래 구분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수입) 과세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구계좌)	300,000,000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	3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VAT계좌)	3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0
(수입) 면세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	지원금정부연구수익	300,000,000

지출 과세/면세거래 회계처리

거래 구분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지출) 과세거래	연구장비·재료비	2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구계좌)	200,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구계좌)	20,000,000
(지출) 면세거래	연구장비·재료비	2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2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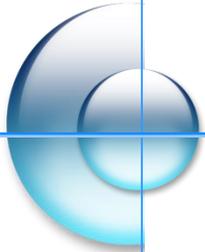
부가세 환급거래 회계처리

거래 구분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과세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구계좌)	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VAT계좌)	20,000,000



부가세 납부거래 회계처리

거래 구분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지출) 과세거래	부가세예수금	30,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VAT계좌)	10,000,000



3. 연구비 정산 업무의 이해 및 유의사항	23
3.1. 연구비 정산 업무 개요	24
3.2. 연구비 정산 업무 유의사항	25
3.3. 연구비 정산 관련 회계처리 사례	26

3. 연구비 정산 업무의 이해 및 유의사항

3.1. 연구비 정산 업무 개요

연구비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8조와 지침 제17조 등에서 연구비 정산 관련 내용을 규정함
-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집행 → 정산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주요 내용 (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등

비목 구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고
직접비	인건비	직접 참여 내·외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의 급여총액(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직접 참여 학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 안됨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시약/재료 등 시제품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되어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전문가활용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본교 여비규정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면 안됨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상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급 	
위탁연구개발비		외부기관 위탁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인력 및 연구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연구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 계상기준 • 정부지원 용역과제 : 인건비와 직접비 합 5% 등 • 민간지원 과제 등 : 총연구비의 15% 등 	

3. 연구비 정산 업무의 이해 및 유의사항

3.2. 연구비 정산 업무 유의사항

연구비 정산
(계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8조와 지침 제17조 등에서 연구비 정산 관련 내용을 규정함
-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집행 → 정산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

비목별
연구비
집행/정산
불인정
사례

비목 구분		불인정 사례	비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 • 비목별 계상 기준 위반 통보 금액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 서류 미비한 집행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 이외의 집행 (카드 분할 결제, 부당가맹점 등) • 환급 가능한 부가세, 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의 근거 없는 변경 및 본인 계좌 외 집행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참여율 기준 비율 초과 집행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학생인건비 • 과제 미참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이전에 구입을 선행한 경우 • 단가 1백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중앙구매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의 여비 규정 외 별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의 매매기준을 미적용 금액 •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상호 간의 서비스 활용비 (단,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사전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연구과제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내용 포함)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식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평가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 예산집행시 사전 품의서 작성/승인 절차 미이행 등 	

3. 연구비 정산 업무의 이해 및 유의사항

3.3. 연구비 정산 관련 회계처리 사례

연구비 정산 회계처리

- 연구비 정산 종료시 ① 집행잔액을 지원기관으로 반납하는 거래, ② 집행잔액을 간접비로 편입하는 거래 및 ③ 불인정 집행금액을 환수하는 거래 등이 발생하고 각각의 경우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함

불인정 회계처리 사례 1 지원기관 반납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40,000,000원이 발생하여 지원기관으로 반납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1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승인함 • 10/26 연구비 집행잔액 40,000,000원을 지원기관으로 출금 이체 처리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	4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불인정 회계처리 사례 2 간접비 편입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10,000,000원이 발생하여 간접비로 편입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1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간접비로 편입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승인함 • 10/21 연구비 집행잔액 10,000,000원을 간접비 계좌로 출금 이체 처리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	1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_연구	1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_간접비	10,000,000	기타운영외수익	10,000,000

불인정 회계처리 사례 3 비용 불인정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사실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내용

사실 관계	• 연구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 5,000,000원이 발생하여 연구책임자로부터 환수하는 거래임			
자료와 증거	• 10/21 연구비 정산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품의서를 작성/승인함 • 10/26 계좌 입금 내역 조회 결과 5,000,000원이 입금 조치 (이후 동 금액을 지원기관으로 출금 이체 처리함)			
거래일자	차변과목	차변금액	대변과목	대변금액
2016.10.26.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예수금	5,000,000
출금 이체시점	예수금	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감사합니다

본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회계법인 이 동 연 공인회계사 | 세무사

dylee@scpa.co.kr

